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학자금기금운영내규

제정 2017. 8. 1.
개정 2019. 11. 11.
개정 2020. 8. 19.
개정 2021. 1. 27.
개정 2021. 8.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임직원에게 학자금기금의 대부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공단에 소속된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 이라 함은 공단의 직제내규에 의한 임원과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 ② “학자금” 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건비, 의료공제회비 등 납입금 일체를 말한다. 단, 학생회비 및 발전기금을 제외한다.
- ③ “할부금” 이라 함은 대부금 총액을 상환기간에 따라 계산한 균등상환액을 말한다.

제4조(학자금기금의 조성) ①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기금을 조성·운용한다.

- ② 제1항의 학자금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성시로부터 학자금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배정받은 기금
 2. 학자금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 ③ 최초 기금은 2016년도 회계결산 정산반환금 중 이자수입액으로

충당하며, 차기년도 회계결산 정산반환금 중 이자수입액을 포함하여 2년 동안 1억6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 경우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5조(이자수입의 운용)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으로 추가 충당되는 재원은 학자금기금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반환) 학자금기금은 공단이 청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 안성시로 원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학자금기금 운영위원회) ① 학자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자금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계부서의 부서장, 감사평가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위원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학자금기금의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대부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단, 대부신청에 따른 경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8조(대출한도) ① 학자금 기금의 1인 최고 대출액은 근속년수 1년 이상자에 한하여 학기당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자의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중도퇴직 시 회수) ① 학자금기금의 대부금 미상환액이 있는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 시까지 미상환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체 이자 가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일 경과후로 한다.

② 제1항의 내규에 의한 기한까지 미상환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퇴직금 및 급여와의 상계조치를 취하여 미상환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장 학자금 대부

제10조(대부대상 및 범위) 학자금의 대부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있고 대부일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으로 한다.

제11조(학자금의 범위) 학자금의 범위에는 제3조제2항의 기준으로 하되, 대부대상 임직원이나 자녀가 임의로 수강신청 한 실험실습비 및 기타 교습비 등은 제외하고, 천원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12조(대부방법) ① 학자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대부하되, 대부시기는 등록금 고지 월 또는 납입기간 해당월로 한다.

② 대부횟수는 본인 및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기본이수학기 범위 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대부신청) ① 학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학생 학자금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대학생 학자금 대부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등록금납입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1부
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신설 2021. 1. 27.>

② 대부대상 임직원이나 자녀가 졸업, 휴학, 퇴학, 복학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생 학자금 대부자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7.>

제14조(대부학자금 상환기간) 대부학자금의 상환기간은 학자금대부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1.>

제15조(상환방법 및 이자 등) ① 본인 학자금을 대부받은 임직원은 대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매월 균등 상환한다.

- ②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은 임직원은 대부금 총액에 대한 할부금을 상환 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 ③ 미상환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10만원단위로 임의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미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납부기간 경과 후 할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⑤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급여공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대부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학자금의 전액을 다른 기관에서 수혜 받는 자. 다만, 학자금의 일부를 다른기관에서 수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대부한다.
- 2. 학년(학기)재 이수자 또는 유급된 자에 대하여는 재이수 및 유급된 학년 분에 한하여 대부하지 않는다.
- 3. 등록금 전액 면제자 또는 전액 장학금 수혜자. 다만, 일부면제자 및 일부장학금 수혜자는 그 차액만 대부한다.

제17조(중복지원방지) ① 학자금 중복지원자는 해당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등록금고지서 상의 금액)를 초과한 자로 한다.

- ② 대부금을 지급하기 전 대부대상의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한 뒤 학자금 대부금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자로 판별 될 경우 대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대부자는 학자금 대부금을 수령 한 뒤 다른 기관에서 수혜 받은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 ④ 이 외의 학자금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본조신설 2021. 8. 11.]

제3장 보 칙

제18조(대부제한 등) ① 대부자가 고의적으로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조치 및 3년간 대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② 대부자가 대부자격을 상실할 경우 대부금을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1.8.11.]

제19조(연체이자) 학자금대출기금의 할부금이 지정된 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연체된 날부터 실제 상환이 되는 날까지 연체된 할부 원금에 대하여 연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18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1.8.11.]

제20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자금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전의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8.11.]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9.>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8.19.,2021.1.27.>

대학생 학자금 대부신청서

접수일자		결					
		재					
1. 대부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입사일자					
주소							
2. 대부신청 내용							
신청금액	금 (₩)						
납부일자		자금용도		담보			
상환기간	개월 ※ 24개월 이내 작성		지급 계좌번호				
3. 학생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학교명	학과	학년	등록금(원)	
4.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학자금 대부약정서 1부 ○ 등록금납입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1부 ○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학자금기금운영내규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학자금을 대부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1.2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학자금 대부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대부신청인 성명·소속·직급·입사일자·생년월일·주소·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학생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학교명·학과·학년·등록금 등	대부신청인 및 대상학생의 확인 절차, 학자금 대부의 심사 및 지급, 대여자자금 상환	위 개인정보는 학자금 대부 신청 및 심사, 대부금 지급 및 상환에만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됨

※ 위와 같이 대부신청인 및 대상자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학자금 대부 신청을 할 수 없어 학자금 대부 및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부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학자금 대부 심사 및 지급, 상환에 대한 자료 확보	위 개인정보는 학자금 대부 신청 및 심사, 대부금 지급 및 상환에만 이용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 동안 보존됨

※ 위와 같이 대부신청인 및 대상자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학자금 대부 신청을 할 수 없어 학자금 대부 및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근거	보유기간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방지를 위한 대여자자금 내역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대부일자, 학교명, 학과명, 학년, 대부금액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제50조5	목적달성시까지(또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보유)

※ 위와 같이 대부신청인 및 대상자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학자금 대부 신청을 할 수 없어 학자금 대부 및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대학생 학자금 대부자 신상변동 신고서

1. 대부신청인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또는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대학생 신상변동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	신상변동내용

학자금기금운영내규 제13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재학증명서 또는 관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